



2020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학교법인 성지학원

---

정관

정관시행세칙

연혁

---



# I. 정관

제정 : 1959. 12. 24.

개정 : 1964. 8. 24, 1967. 12. 7, 1974. 7. 31, 1975. 10. 20, 1976. 1. 20, 1977. 1. 8, 1977. 8. 26, 1978. 7. 10, 1979. 1. 25, 1979. 2. 29, 1981. 11. 21, 1982. 3. 1, 1983. 11. 9, 1984. 6. 8, 1985. 2. 23, 1986. 6. 12, 1987. 11. 17, 1990. 5. 7, 1990. 12. 7, 1991. 4. 22, 1992. 3. 1, 1997. 11. 21, 1998. 11. 13, 1999. 7. 16, 2000. 8. 4, 2001. 2. 9, 2001. 6. 28, 2002. 3. 22, 2002. 7. 25, 2003. 5. 29, 2004. 3. 11, 2005. 5. 10, 2005. 9. 29, 2006. 6. 26, 2006. 8. 4, 2006. 11. 21, 2007. 3. 5, 2007. 9. 10, 2008. 4. 28, 2008. 12. 22, 2009. 3. 9, 2009. 9. 16, 2010. 2. 24, 2010. 4. 21, 2010. 11. 5, 2011. 4. 27, 2011. 8. 5, 2012. 2. 2, 2012. 2. 27, 2012. 8. 21, 2012. 9. 21, 2012. 12. 18, 2013. 2. 15, 2013. 4. 25, 2013. 6. 25, 2013. 8. 27, 2013. 11. 27, 2014. 2. 27, 2014. 3. 18, 2014. 4. 24, 2014. 7. 24, 2014. 11. 21, 2014. 12. 30, 2015. 6. 26, 2015. 8. 20, 2015. 9. 22, 2015. 10. 23, 2015. 12. 18, 2016. 2. 23, 2016. 3. 30, 2016. 7. 22, 2016. 8. 25, 2017. 2. 23, 2017. 6. 22, 2017. 9. 22, 2018. 8. 24, 2019. 2. 13, 2019. 7. 1, 2019. 9. 1, 2019. 10. 18, 2020. 2. 7, 2020. 8. 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산외국어대학교
2. 성지고등학교(개정 2009.09.16)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개정 2014.03.18)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2.09.21)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9.09.1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하며, 제2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사·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6.11.21., 2020.08.25.)

1. 대학교 :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1.21., 2020.08.25.)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심사·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02.23)

제12조의 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 ①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20.08.25.)

1. 대학교 :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3절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제22조의 2(상근임원)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 상근할 수 있고, 상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04.28.)

1. 이사장(신설 2008.04.28.)
2. 상임이사(신설 2008.04.28.)

②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008.04.28.)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16.02.23.)

1. 이사 4년(개정 2006.11.21.)
2. 감사 3년(개정 2006.11.21., 2016.02.2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16., 2013.06.25.)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9.16.)

1. 대학평의원회 : 3인
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 재직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9.09.16.)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 할 때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삭제

제24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1.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소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1.)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08.2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9.16.)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02.23.)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02.23.)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9.16.)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09.16.)

## 제 2 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4.07.24)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2.23)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 3(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09.16)

제35조의 4(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1., 2020.08.25.)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조교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1.21.)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은 평의원의 임기 중에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평의원에서 해촉되며,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6.11.21.)

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11.21.)

제35조의 5(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소집) 평의위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5조의 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09.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 4 절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35조의 8(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령,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1.)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의 9(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2.23]

#### 제 5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5조의10(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4)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업(토지, 기계)
2. 조립업
3. 서비스업
4. 교육사업(신설 2013.11.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신설 2013.11.27.)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부를 둔다.

1. 성지학원 수익사업부
2. 외대골프아카데미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신설 2013.11.27.)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6.)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09.16., 2016.02.23.)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 제 6 장 교직원

### 제 1 절 교원

#### 제 1 관 임용(개정 2016.02.23.)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의 총장은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13.08.27., 2016.02.23.)

②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학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대학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대학교 강사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승인을 거쳐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27., 2014.02.27., 2014.11.21., 2016.02.23., 2019.7.1.)

####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08.21.)

마. (삭제 2012.02.27.)

2. 급여 :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 교수시간, 연구업적 및 성과, 학생지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4.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 교목실장, 실·처장, 본부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0., 2013.06.25., 2014.07.24.)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4.02.27.)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6.02.23.)

제43조의 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 임용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02.27.)

제43조의 3(삭제 2020.02.07.)

##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7.02.23.)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02.23.)

[전문개정 2016.02.23.]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9.16.)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3.)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6.02.23.)
- 6의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02.23.)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2.23.)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국회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2.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02.23.)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39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 2014.02.27., 2020.02.07.)

- ②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반액(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 2014.02.27., 2016.02.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16., 2014.02.27., 2020.02.07.)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16.02.2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0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5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의 보수는 봉급의 5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 2014.02.27.)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
-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09.16., 2016.02.23.)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부),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구 또는 직제 등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21., 2013.04.25.)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 2013.04.25.)

제50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4(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개정 2019.09.01.)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대학교의 경우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1., 2016.02.23., 2019.07.01.)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1., 2016.02.23.)
2. 교원의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②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과 같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활동
3. 교내외 봉사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교원 및 직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09.22)

1. 대학교는 18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단, 위원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함.) (개정 2006.06.26., 2013.06.25., 2014.04.24., 2015.09.22., 2015.10.23.)
2. 고등학교는 7인의 교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7.)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06.25., 2015.09.2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8.25., 2019.09.01.)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5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1인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9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9.10.18.)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위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02.07.)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19.09.01.]

제59조의3(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9조에 따른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 신설 2020.02.07.]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9.01.)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9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본조 신설 2016.02.23.]

제63조의 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2.09.21., 2014.11.21., 2019.09.01.)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정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징계양정은 공적 등에 따라 감경하거나 비위행위의 경합과 시기에 따라 가중할 수 있으며,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감경과 가중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2.09.21.][전문개정 2013.04.25.](개정 2016.02.23.)

제6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 2016.02.23., 2019.09.0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6.02.23.)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6.02.23.)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02.2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9.21.)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08.25.)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 제3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대우직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2(인사교류) 임용권자는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각급 학교 사무직원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학교폐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법인 내에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보 발령은 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02.13.]

제85조(복무) ①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고등학교의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02.23.]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09.21.)

제87조의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2009.03.09.)

② 명예퇴직 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09.)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03.09.)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2.09.21.)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직제

### 제 1 절 법인

제89조(법인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4.27.)

③ 이 법인과 설치학교의 건학정신 구현 및 선교활동을 위하여 대학교회와 선교위원회를 두며, 선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 2014.11.21.)

### 제 2 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의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④ 교학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05.,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⑤ (삭제 2014.07.24.)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9.09.16.)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실을 두며, 교목은 목사자격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대학교에 총무처,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산학협력단, 만오교육문화원, 안전방재관,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IPP사업단, 청해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6.03.30., 2016.07.22., 2017.06.22., 2017.09.22.,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20.02.07.)

③ 처장,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안전방재관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 산학협력단장, 각 사업단 단장, 원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단, 처장, 실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19.09.01., 2020.02.07.)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명시된 조직의 하위부서 보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9.22., 2016.02.23., 2019.02.1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08.20.]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 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4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과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 및 부기관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2.02.02., 2014.07.24., 2015.09.22., 2016.07.22., 2016.08.25.)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5조(삭제) (개정 2007.09.10.)

### 제 3 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3.08.27.)

제9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교목실과 행정실을 두고 교목은 목사자격자로서 교사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02., 2019.07.01.)

제98조(행동강령) 고등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5.06.26.)

### 제 4 절 정원

제100조(정원 및 정년) ①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 및 정년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인과 각급학교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각급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로서,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속자 혹은 특별채용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05.)

## 제 8 장 보칙

제10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3.06.25.)

제10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	성명	임기	주소
이 사 장	정 태 성	4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이 사	임 봉 은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임 지 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 해 덕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 해 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 이 정관은 195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6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79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4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성지공업전문대학에 관한 종전 규정의 변경사항은 학교법인 서린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고 법원에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198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정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정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대학교원부터 적용되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5. 조 교 : 1년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임면되는 학교의 장과 조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2조 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및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 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4조의 4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직 임면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보임 중인 도서관장은 제4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8.0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2.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8.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9.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2.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2.1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4.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6.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8.27.)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교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감은 2013년 9월 1일자부터 이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11.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2.27.)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 일반직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신규 임용된 2급 및 3급 일반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정년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4.03.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4.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7.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하부규정의 폐지) 이 정관의 시행과 함께 대학교의 “대학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4.12.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6.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9.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0.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48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6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② (적용례) 제4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 및 제44조 제7호의2 개정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부 칙(개정 2016.03.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7.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8.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2.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9.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8.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13.)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6.14.)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8.29.)

제1조(시행일) 변경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2조 본문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10.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2조 본문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20.02.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의 시행일은 사립 학교법 부칙(법률 제16310호, 2019.04.16.)을 따른다.

② (경과조치) (삭제 2020.08.25.)

부 칙(개정 2020.08.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874호, 2020.01.29.) 제1조를, 제25조 제3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078호, 2020.03.24.) 제1조를 따른다.

② (경과조치) 제25조 제3항의 이사회의 이사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078호, 2020.03.24.) 제3조에 따른다.



(별표 1)

법인일반직원 정원

총계	42명
일반직계	3명
2급(참여)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5급(부참사)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수익사업계	39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3명
의사	3명
의료기사	3명
간호원	2명
보조간호원	10명
약사	1명
영양사	1명
운전기사	1명
잡부	14명

(별표 2) (개정 2014.2.27.)

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지고등학교		비고
직급	정원 수	직급	정원 수	
총계	108	총계	30	
일반직 계	107	일반(기술)직 계	29	
G1(책임행정관)	26	2급(참여)		
G2(선임행정원)	54	3급(부참여)		
G3(담당행정원)	27	4급(참사)		
		5급(부참사)	1	
		6급(주사)	2	
		7급(부주사)	4	
		8급(서기)	7	
		9급(부서기)	15	
별정직 계	1	별정직 계		
		기술직 계	1	
		4급 사서관		
		5급	사서관 전산처리관	
		6급	사서 전기기사 전산처리사	
		7급	사서보 전기기사보 전산처리사보	
		8급	사서서기 전기기원 전산처리원	
		9급	사서서기보 전기기원보 전산처리원보	1
고용직 계		고용직 계		

(별표 3) (개정 2014.2.27., 2016.02.23.)

학교 일반직원의 정년

구분	정년		비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직	G1(책임행정관)	
		G2(선임행정원)	만 60세
		G3(담당행정원)	만 60세
성지고등학교	국가공무원법 준용		

(별표 4)

## 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양성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사학경영자 일동은 교육입국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사학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강령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권면과 제재로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 건학정신

우리는 사학의 뿌리가 숭고한 건학정신에 있음을 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일에 헌신한다.

### ○ 공공성

우리는 사학경영에 있어서 학원내외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공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 자주성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단호하게 배격하며, 자율적으로 교육방향을 실천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앙양한다.

### ○ 경영합리화

우리는 사학경영을 합리화·효율화하고, 모든 교육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 화합·협력

우리는 사학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 II. 정관시행세칙

제정 : 2011. 4. 2.

개정 : 2012. 9. 21, 2014. 7. 24, 2014. 11. 21, 2016. 02.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학교의 장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24.)

1.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인사, 보수, 직제 등,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4. 학교의 건축 등,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 등,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고문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고문 및 상근임원의 위촉 및 보수) 상근하는 법인 고문 또는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고문 및 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정적용기준) 법인 직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에 대하여는 학교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교원 임용 승인신청) 정관 제43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제11조(직원임용 제정)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정은 발령 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직원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3조(각종 규정류 등) ①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류”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반 체계적인 규범형식인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를 말한다.

②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는 다음 각호1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제정·개정·폐지 할 수 있다.

1. 관련 상위 법규 및 정관의 변경
2. 용어 변경 등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조문 변경
3.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될 경우 이사장은 관련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학교에 권고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1.]

제14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7.27.)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2.23.)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